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  
고 그 의견을 제출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유 옥 분
위 원	여 운 봉
위 원	김 재 훈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동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결산 요약 및 분석'과 '기타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요약 및 분석'과 '기타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유 옥 분 (서명)

위 원 여 훈 봉 (서명)

위 원 김 재 훈 (서명)

## 목 차

1. 결산검사 개요 .....	1
2. 결산요약 및 분석 .....	2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
(2) 재무제표 .....	14
(3) 성과보고서 .....	16
(4) 기금결산 .....	19
(5) 결산서 첨부서류 .....	21
3. 기타 권고사항 .....	26

# 1. 결산검사 개요

□ 결산검사기간 : 2021. 3. 26 ~ 4. 14 (20일간)

□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결산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0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세출예산 중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정해진 용도와 금액 내에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 대조, 실무자 면담 및 질문 그리고 최초 계획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야와 실태별로 관련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결산검사의 내용

검사내용은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세입·세출 회계별 결산액과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 여부, 미수납액의 이월관리의 정확성 및 결손처분사항, 채권, 기금의 운용실적 및 관리실태, 세입에 대한 징수실태(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그리고 세출예산의 집행실태(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의 적정여부, 불용내역 및 사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의 적정여부, 예비비 집행 등)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하였습니다.

□ 결산검사위원의 현황

구 분	성 명	담당분야	비 고
대표위원	유 옥 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전 분야	동구의회의원
위 원	여 운 봉		전 구의원
위 원	김 재 훈		공인회계사

## 2. 결산요약 및 분석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1) 결산총괄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A-B)
합계	338,191,732	349,778,329	272,565,183	77,213,146
일반회계	335,866,364	347,278,983	271,540,996	75,737,987
특별회계	2,325,368	2,499,346	1,024,187	1,475,159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41,224,092	13,543,315	12,641,723	15,039,053	3,921,746	32,067,308
일반회계	41,143,092	13,462,315	12,641,723	15,039,053	3,879,115	30,715,780
특별회계	81,000	81,000	-	-	42,631	1,351,528

당해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49,778,32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86,597천원 초과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72,565,18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7.93%로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77,213,146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067,308천원으로 전년도 세계잉여금 28,580,810천원 대비 3,486,49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순세계잉여금(가+나)	초과세입금(가)	집행잔액(나)						
			소계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32,067,308	11,586,597	20,480,711	2,088,076	7,920	390,456	1,500	10,606,602	7,386,157
일반회계	30,715,780	11,412,619	19,303,162	2,082,936	7,920	390,456	1,500	10,541,332	6,279,018
특별회계	1,351,528	173,978	1,177,549	5,140	-	-	-	65,270	1,107,139

## 2) 일반회계

### 가. 세 입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년도	352,606,806	365,056,226	359,487,703	193,596	5,374,927
당해연도	335,866,364	352,629,654	347,278,983	214,906	5,135,765

일반회계 세입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16,740,442천원 감소한 335,866,364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208,720천원 감소한 347,278,983천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48%로서 전년도 98.47%에 비해 소폭(0.0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21,310천원 증가한 214,906천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과 지방세 세입항목으로 결손처분사유는 시효소멸 99,311천원, 평가액부족 87,740천원, 무재산 27,854천원 등입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5,135,76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은 1.46%로서 전년도 1.47%에 비해 소폭(0.01%포인트)감소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자금압박, 폐업또는부도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가)	징수결정액(나)	실제수납액(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다)/(가)	(다)/(나)	
일반회계	지방세	21,160,891	21,866,439	21,360,954	17,123	488,362	100.95	97.69
	세외수입	9,794,907	15,220,725	10,375,539	197,783	4,647,403	105.93	68.17
	지방교부세	10,795,000	17,596,204	17,595,204	-	-	162.99	100.00
	조정교보금등	85,965,807	90,022,303	90,022,303	-	-	104.72	100.00
	보조금	142,804,980	142,580,202	142,580,202	-	-	99.84	10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5,344,779	65,344,781	65,344,781	-	-	100.00	100.00
	소계	335,866,364	352,629,654	347,278,983	214,906	5,135,765	103.40	98.48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347,278,983천원으로 미수납액 5,135,76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항목 중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68.17%로 전년도의 69.96%에 비해 감소(1.79%포인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162.99%에 달하는데, 본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상황을 폭넓게 반영하고 사업연도 중의 변동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가급적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의 항목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당해연도 실제수납액	전년도 실제수납액	증감액	전기대비증감율 (%)
일반회계	지방세	21,360,954	20,409,893	951,061	4.66
	세외수입	10,375,539	11,591,629	-1,216,090	-10.49
	지방교부세	17,595,204	16,309,240	1,285,964	7.88
	조정교보금등	90,022,303	86,016,947	4,005,356	4.66
	보조금	142,580,202	104,439,605	38,140,597	36.5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5,344,781	120,720,389	-55,375,608	-45.87
	소계	347,278,983	359,487,703	-12,208,720	-3.40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항목 총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증감폭이 커서 증감률이 각각 36.52%, -45.87%에 달했습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31,736,493천원으로 전년도 실제수납액 32,001,522천원 대비 265,029천원(0.83%)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38,140,59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더불어마을시범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각종 사회보장적 복지사업, 공공시설 운영비지원사업 등 매년 발생하는 지원에 덧붙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 지원금지급과 일자리창출 및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55,375,608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7,128,372천원으로 2018년 순세계잉여금 88,046,274천원에 비해 60,917,902천원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 큼니다.



당해연도 및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제외) 실제 수납액의 항목별 구성내역과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당해연도 실제수납액	전년도 실제수납액	당해년도 구성비율(%)	전년도 구성비율(%)
일반회계	지방세	21,360,954	20,409,893	7.58	8.55
	세외수입	10,375,539	11,591,629	3.68	4.85
	지방교부세	17,595,204	16,309,240	6.24	6.83
	조정교부금 등	90,022,303	86,016,947	31.93	36.03
	보조금	142,580,202	104,439,605	50.57	43.74
	소계	281,934,202	238,767,315	100.00	100.00

당해연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이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26%이며 전년도의 13.40%에 비해 다소 감소(2.14%포인트)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74%(전년도 86.60%)이며, 앞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 비중의 감소에 비례하여 반대로 전년도 대비 동일한 비율(2.14%포인트)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처리(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결손처분전 미수납액	결손처분전 미수납액처리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년	5,350,671	214,906	5,135,765
2019년	5,568,523	193,596	5,374,927
2018년	5,448,272	141,318	5,306,954
2017년	5,980,137	728,517	5,251,620
2016년	6,157,539	526,582	5,630,957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세입항목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며, 당해연도 결손처분전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214,906천원으로 전년도 193,596천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결손 처분사유는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무재산 등입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대부분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역시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원천적으로 막고, 3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변호판 영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여야 하며, 구청에서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의 각종 업무와 연계하는 등 관련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가급적 결손처분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사유별 결손처분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5년 이상의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일괄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징수노력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이나 임의처분 등의 불합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나. 세 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세출예산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보조금반납액포함)
전년도	322,920,493	352,606,806	294,142,922	35,277,910	23,185,974
당해연도	300,588,454	335,866,364	271,540,996	41,143,092	23,182,276

당해연도 재정규모의 경우 예산액 300,588,45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35,277,910천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335,866,364천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4.75%(16,740,44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71,540,99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22,601,92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0.85%로서 전년도 지출액 비율 83.42%에 비해 2.5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 감소폭이 크지만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 70,000,000천원 전출의 기저효과에 의한 감소로 보이며, 예산현액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한 만큼 고려할 만한 특이사항은 아닙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불용액)은 전기대비 3,698천원 감소한 23,182,276천원으로 전기대비 0.0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1,143,092천원으로 주요 이월액을 살펴보면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만석화수 해안 산책로조성사업, 동구여성회관건립사업,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개선사업, 더불어마을 시범사업(금창동쇠뿔고개, 송희마을), 애인동네시범사업(만석 주꾸미 마을)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자금교부 지연, 장기 사업기간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5,865,18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집행잔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소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지출잔액	보조금반납금 및 정산잔액	예비비
2017년	60,692,459	147,877	-	-	7,218,882	1,751,064	51,574,636
2018년	82,894,445	98,240	-	-	11,766,426	4,138,065	66,891,714
2019년	23,185,974	7,445	23,114	-	2,350,052	3,856,717	16,948,646
2020년	19,249,801	390,456	7,920	1,500	6,225,657	2,082,936	10,541,332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의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90,456천원, 지출잔액 6,225,657천원,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2,082,936천원, 예비비 10,541,332천원, 예산절감액 7,920천원, 낙찰차액 1,500천원입니다.

연도별 집행잔액은 2018년까지의 증가추세가 전년도에 하락으로 반전된 후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3,936,173천원 감소한 19,249,80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예비비 10,541,332천원(전년도 16,948,64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708,469천원(전년도 6,237,32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2.59%로서 전년도 1.77%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년도 23,114천원보다 15,194천원 감소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을 모든 부서에 공통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대폭 감소한데 이어 당해연도에 감소추세가 유지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행정절차 등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시기 미도래 등 사업부서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서 당해연도 편성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한 세출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의 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반납액 포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일반회계 소계	335,866,364	271,540,996	41,143,092	13,462,315	12,641,723	15,039,053	23,182,276
일반공공행정	27,880,891	17,137,582	9,779,899	9,711,664	68,235	-	963,409
공공질서및안전	1,467,253	1,214,133	-	-	-	-	253,120
교육	6,094,197	6,051,279	-	-	-	-	42,918
문화및관광	28,869,991	19,120,600	9,229,744	1,128,580	8,101,164	-	519,648
환경보호	7,039,194	6,157,627	473,805	420,804	53,000	-	407,762
사회복지	129,441,772	124,322,477	773,764	725,193	48,571	-	4,345,531
보건	17,420,074	16,424,147	506,739	66,596	440,143	-	488,188
농림해양수산	4,351,162	409,191	3,905,292	570,000	3,335,292	-	36,679
산업,중소기업	4,562,420	3,691,120	125,927	-	126,927	-	744,373
교통및물류	9,060,509	7,809,796	330,180	330,180	-	-	920,534
국토및지역개발	39,408,329	21,842,637	16,016,742	509,298	468,390	15,039,053	1,548,951
예비비	10,541,332	-	-	-	-	-	10,541,332
기타	49,729,239	47,360,409	-	-	-	-	23,688,830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지출액 124,322,47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액 21,842,637천원, 문화 및 관광 지출액 19,120,600천원, 일반공공행정 지출액 17,137,582천원, 보건 16,424,147천원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85%로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등의 집행률은 특히 저조하여 각각 9.40%, 55.43%, 61.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5%로서 전년도 비율 10.00%대비 2.2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보조금 반납액 포함)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4,345,53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48,951천원, 일반공공행정 963,409천원, 교통 및 물류 920,534천원 등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의 세출결산 지출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목	전년도 지출액	당해년도			전년대비 증감		지출액 구성비율(%)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금액	비율(%)	전년도	당해년도
일반회계 소계	294,142,922	335,866,364	271,540,996	80.85	-22,601,926	-7.68	100.00	100.00
일반공공행정	88,634,405	27,880,891	17,137,582	61.47	-71,496,823	-80.66	30.13	6.31
공공질서및안전	1,301,728	1,467,253	1,214,133	82.75	-87,595	-6.73	0.44	0.45
교육	6,431,252	6,094,197	6,051,279	99.30	-379,973	-5.91	2.19	2.23
문화및관광	14,714,131	28,869,991	19,120,600	66.23	4,406,469	29.95	5.00	7.04
환경보호	4,799,355	7,039,194	6,157,627	87.48	1,358,272	28.30	1.63	2.27
사회복지	94,057,130	129,441,772	124,322,477	96.05	30,265,347	32.18	31.98	45.97
보건	6,542,105	17,420,074	16,424,147	94.28	9,882,042	151.05	2.22	6.05
농림해양수산	185,474	4,351,162	409,191	9.40	223,717	120.62	0.06	0.15
산업_중소기업	2,100,242	4,562,420	3,691,120	80.90	1,590,878	75.75	0.71	1.36
교통및물류	4,680,163	9,060,509	7,809,796	86.20	3,129,633	66.87	1.59	2.88
국토및지역개발	23,318,420	39,408,329	21,842,637	55.43	-1,475,783	-6.33	7.93	8.04
예비비	-	10,541,332	-	0.00	-	-	0.00	0.00
기타	47,378,518	49,729,239	47,360,409	95.24	-18,108	-0.04	16.11	17.44

세출결산 지출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중 사회복지관련 지출액이 124,322,477천원으로 당해연도 세출결산 지출액의 45.9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대비 30,265,34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감소액 22,601,926천원 중 일반공공행정 지출액 감소분 71,496,82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액 감소분 1,475,783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지출액 감소분은 주로 전년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액 70,000,000천원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중요성 측면에서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보건, 문화및관광,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9,882,042천원, 4,406,469천원, 3,129,633천원, 30,265,34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사회복지 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97%이고 보건 지출액 비중은 6.05%로서 전년 대비 각각 13.99%포인트, 3.83%포인트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1,170,283천원(일반예비비 2,000,000천원,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170,283천원)으로 편성된 후 628,951천원의 지출결정으로 10,541,332천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았습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해년도		전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예산이용	-	-	-	-
예산전용	32	261,774	22	212,864
예산이체	192	20,452,215	283	63,869,340

예산전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방역을 위한 재료비의 시설취득비 전용(보건행정과) 60,000천원,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의 시설비 전용(총무과) 80,000천원, 슬레이트처리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의 시설비 전용(환경위생과) 28,350천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물론 단위사업까지 의회의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산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은 지출을 피하는 것이므로 예산전용의 발생을 가능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체액 20,452,215천원의 경우 전액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이체에 해당되며, 전년도의 예산이체액도 전액 조직개편에 따른 발생액이었습니다. 큰 폭의 공무원 증원(전년도 대비 111명)과 계속되는 잦은 조직개편은 업무연속성의 공백, 업무 효율 저하, 민원인의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관리가 필요합니다.

### 3) 특별회계

#### 가. 세 입

당해연도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년도	2,555,750	3,850,795	2,676,621	177,553	996,620
당해연도	2,325,368	3,497,462	2,499,346	27,405	970,710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2,499,34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1.46%(전년도 69.51%)이며, 전년도 대비 177,27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가)	정수결정액(나)	실제수납액(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정수율(%)		
						(다)/(가)	(다)/(나)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186,067	186,069	186,069	-	-	100.00	100.00
	의료급여기금	313,982	408,510	304,672	-	103,838	97.03	74.58
	주차장	1,825,319	2,902,883	2,008,605	27,405	886,872	110.04	69.19
	소계	2,325,368	3,497,462	2,499,346	27,405	970,710	107.48	71.4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186,069천원으로 전년도 실제수납액 389,701천원에 비해 203,63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304,672천원으로 정수결정액 대비 74.58%이며, 미수납액은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2,008,605천원으로 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69.19%로 전년도 65.05% 대비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 해당됩니다.

#### 나. 세 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세출예산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반납액포함)
전년도	2,384,848	2,555,750	1,171,911	5,150	1,378,689
당해연도	2,320,218	2,325,368	1,024,187	81,000	1,220,181

당해연도 지출액은 1,024,18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04%(전년도 45.85%)이며, 전년도 대비 147,72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보조금반납액 포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86,067	154,770	-	-	-	31,297
의료급여기금	313,982	228,820	-	-	-	85,162
주차장	1,825,319	640,597	81,000	81,000	-	1,103,722
특별회계 소계	2,325,368	1,024,187	81,000	81,000	-	1,220,18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지출액의 경우 미세먼지측정기 분석 수수료 (환경위생과) 49,643천원, 경로당 안전진단(노인장애인복지과) 45,668천원, 구민운동장 환경개선(문화홍보체육실) 31,959천원,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20,400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심의회 후 매입 절차 진행에 따라 81,000천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당해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비고
합계	13,462,315	12,641,723	15,039,053	
동구여성회관 건립	5,100,000			
청년센터운영	2,850,621			
송림2동신축공사	1,641,229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658,564			
만석화수해양산책로 조성사업	530,000	3,245,674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8,096,263		
공립치매진담형시설재건축		219,744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159,857		
하수도정비및준설공사		135,183		
도시재생-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8,301,280	
금창동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			2,479,583	
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			1,413,171	
애인동네시범사업(만석주꾸미마을)			1,118,489	
도시재생뉴딜(화수정원마을)			515,249	
기타	2,681,901	785,002	1,211,281	

명시이월 39건(13,462,315천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국·시비 교부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의회의 사전승인하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동구 여성회관건립」 사업(여성정책과) 5,100,0000 천원, 「청년센터운영」 사업(주민자치과) 2,850,621천원, 「송림2동 신축공사」 사업(주민자치과) 1,641,229천원,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문화홍보체육실) 658,564천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1단계)」사업(도시전략실) 530,000천원 등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의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여성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절차 지연에 따라, 청년센터운영사업의 경우 2020년 10월 시 특별교부세 15억이 교부됨에 따라 2020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에정인 2021년으로 이월하여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송림2동 신축공사 사업의 경우 송림1,2구역 사업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당초 신축 예정부지 소유주의 개발이익 기대로 부지 매입이 결렬됨에 따라, 배다리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대상건물이 인천시 건축자산으로 등재되어 철거 및 개축이 불가하여 건물원형 복원의 특수성 및 난이도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1단계)사업은 사업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수목 등)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27건(12,641,723천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건축과) 8,096,263천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1단계)」사업(도시전략실) 2,345,674천원,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재건축확대구축」사업(건강증진과) 219,744천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건설과) 159,857천원, 「하수도정비및준설공사」사업(건설과)135,183천원 등입니다. 주요 사고이월의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1단계) 조성사업은 준공금 미집행으로,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은 설계량 이상의 발파암 발생 및 지속된 장마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공립치매전담형시설재건축 사업은 사업부지 선정문제로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으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사업은 셋골로 161번길 일원 노후하수암거 긴급 보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52건(15,039,053천원)은 「도시재생뉴딜(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사업(도시전략실) 8,301,280천원, 「금창동 쇠뿔고래 더불어마을」사업(도시정비과) 2,479,583천원, 「송희마을 더불어마을」사업(도시정비과) 1,413,171천원, 「애인동네 시범운영(만석주꾸미마을)」사업(도시정비과) 1,118,489천원, 「도시재생뉴딜(다시,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도시전략실) 515,249천원 등으로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로서 수 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연도별 사업의 추진 내역을 확인하여 계획연도에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될 것입니다.

## (2) 재무제표

당해연도의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당해연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b>자산</b>	<b>628,718,156</b>	<b>582,391,834</b>	46,326,322	7.95
유동자산	195,982,225	177,702,149	18,280,076	10.29
투자자산	2,077,569	2,147,372	-69,803	3.25
일반유형자산	67,540,287	63,344,367	4,195,920	6.62
주민편의시설	168,109,226	144,655,744	23,453,482	16.21
사회기반시설	194,473,377	194,064,398	408,979	0.21
기타비유동자산	535,472	477,803	57,669	12.07
<b>부채</b>	<b>8,791,607</b>	<b>8,373,649</b>	417,958	4.99
유동부채	4,753,931	3,808,486	945,445	24.82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4,037,676	4,565,163	-527,487	-11.55
<b>순자산</b>	<b>619,926,549</b>	<b>574,018,185</b>	45,908,364	8.00
고정순자산	430,527,505	402,442,985	2,808,452	6.98
특정순자산	111,213,847	103,203,784	8,009,763	7.76
일반순자산	78,185,198	68,371,416	9,813,782	14.35

당해연도 말 자산은 628,718,156천원으로 전년도 582,391,834천원 대비 46,326,322천원(7.9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산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성자산은 494,778천원, 단기금융상품은 17,870,630천원 증가하여 유동자산총액은 18,280,076천원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23,453,482천원 증가는 주로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4,468,734천원, 의료시설 9,037,930천원 증가로 인한 것이며, 사회기반시설 증가액은 대부분 토지(도로) 1,686,865천원, 건물 2,386,450천원 증가액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채는 8,791,607천원으로 전년도 8,373,649천원 대비 417,958천원 증가한 바,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 증가액 945,445천원, 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액 527,488천원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자산은 전년도 대비 46,326,322천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417,958천원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45,908,364천원(8.00%)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재정운영 및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당해연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1-2)	42,290,545	41,423,645	866,900	2.09
1. 사업총원가	182,669,273	144,417,908	38,251,365	26.49
2. 사업수익	140,378,728	102,994,263	37,384,465	36.30
II. 관리운영비	48,470,151	49,354,625	-884,474	-1.79
III. 비배분비용	4,690,737	4,976,800	-286,063	5.75
IV. 비배분수익	7,673,079	6,335,063	1,338,016	21.12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87,778,354	89,420,007	-1,641,653	1.84
VI. 일반수익	132,467,934	127,710,672	4,757,262	3.73
VII. 재정운영결과(V-VI)	-44,689,580	-38,290,666	-6,398,914	16.71

당해연도의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82,669,273천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익 140,378,728천원을 차감한 42,290,545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866,9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관리운영비 48,470,151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47,215,377천원, 경비 1,254,77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비용 4,690,737천원은 주로 감가상각비 3,841,300천원(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대손상각비 158,753천원, 기타비용 690,684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배분수익은 경상적 세외수익 3,991,474천원, 임시적세외수익 2,848,071천원을 합한 자체조달수익 6,839,545천원과 기타수익 833,53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8,01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의 재정운영결과는 (-)44,689,580천원으로 전년도의 재정운영결과 (-)38,290,666천원에 비해 6,398,91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 (3) 성과보고서

당해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당해연도의 비전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비전 - 전략목표(10개) - 정책사업목표(87개) - 단위사업(170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10	87	194	13	121	60	69.07
의회사무과	1	1	6	0	3	3	50.00
기획감사실	1	3	7	0	6	1	85.71
문화홍보체육실	1	7	19	6	7	6	68.42
교육아동청소년실	1	4	10	1	6	3	70.00
도시전략실	1	2	5	0	1	4	20.00
자치행정국	1	23	45	2	35	8	82.22
복지환경국	1	18	38	1	22	15	60.53
안전도시국	1	16	46	2	28	16	65.22
보건소	1	2	7	1	3	3	57.14
동행정복지센터	1	11	11	0	10	1	90.91

당해연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은 69.07%로서 전년도의 73.02%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 50.00%, 문화체육홍보실 68.42%, 도시전략실 20.00%, 복지환경국 60.53%, 안전도시국 65.22%, 보건소 57.14%으로 성과지표 평균목표 달성률 69.07%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과와 복지환경국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평균미달로 나타나 성과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내역 중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 성과, 달성률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 중 발견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	검토
문화홍보체육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구경홍보 강화(건)	페이스북,블로그 합계 접속수	400,000	679,193	169	구청공무원의 접속이나 비정상적인 과다접속자 등을 배제하는 절차가 없다면 달성률 과대평가 가능성 있음.
문화홍보체육실	박물관및체험관 교육 운영횟수(회)	교육운영횟수	30	63	210	전년도 실적이 57이었으나 당해연도 목표를 전년과 동일하게 30명으로 설정해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남.
문화홍보체육실	유휴공공시설 활용 관광자원 개발(개소)	관광관련시설 설치 운영수	2	6	300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형물 4개 설치로 목표 초과달성으로 평가(단순 조형물이 시설인가 하는 문제)
교육아동청소년실	장학금 수혜인원(명)	장학금 수혜인원수	250	129	52	전년도 목표(1200명)와 실적(1188명)에 비해 당해연도 목표와 실적이 너무 저조함.
도시전략실	지역수산업관광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관련 4개 성과지표	공정률, 집행률			미달성	전년도와 당해연도 4개씩의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지표는 당해연도 1개뿐임. 지나치게 높은 목표설정이거나 사업추진 부진
세무과	구세외수입 징수실적(%)	세외수입이월미수납액 징수율	10.6	11.1	105	5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징수율 10.6%는 지나치게 낮은 목표
민원지적과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기준점 유지보수(건)	지적민원 처리건수	7300	7770	100	전년도 목표(7600), 실적(7376) - 전년도 실적에 당해연도 목표를 맞춰 쉽게 목표 달성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실적(명)	연간 이용인원	800	1252	156	전년도 목표(1108), 실적(1470)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 설정
복지정책과	자활참여자 성공률(%)	성공률	40	38.05	95	전년도 목표(22.4), 실적(23.6) 대비 당해연도 높은 목표치 설정으로 성과미달했으나 바람직
보건행정과	영유아 예방접종률(%)	접종률	95	95.2	100	목표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목표를 100 또는 100에 가깝게 설정해야 할 성격의 성과지표에 대해 95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성과보고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수정, 변경하여 연관성이 높아진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 설정의 임의성은 여전히 발견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 총괄 자료 중 집계 오류와 세부 항목에서 몇몇 기재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한 목표(주로 비율로 표시되는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할 성과지표도 있는 반면 매년 목표(주로 건수 또는 인원수로 표시되는 목표로서 초기 시행으로 양성 되먹임 효과가 생겨 동일한 노력에도 급수적으로 성과지표가 개선 또는 악화되는 항목)를 재설정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성과지표도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 성과목표 설정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행정의 통일성과 그에 따른 비교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 동일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성과지표가 이용자만족도(7개동), 이용자증가율(2개동), 사무집기 구입결과(2개동) 등으로 제각각인 데다 동일한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목표 비율(이용자만족도의 경우 80%~93%, 이용자증가율의 경우 1%와 19%)이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용자만족도의 경우에도 6개동은 백분율, 1개동은 5점 척도로 측정산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1개동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아예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별 행정의 다양성과 자치도 중요하지만 성과평가는 외부적인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주민자치과에서 매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를 모든 동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문조사도 동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구청 주관하에 일관된 절차와 기준 아래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4) 기금결산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 증감액 및 조성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증감율(%)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저소득자소대출 이자보전	425,591	8,844	10,419	1,575	434,435	2.08
사회복지기금	7,770,706	102,512	234,022	131,510	7,873,218	1.32
경제활성화기금	2,469,144	1,231,670	1,262,959	31,289	3,700,814	49.88
재난관리기금	2,117,314	217,051	245,040	27,988	2,334,365	10.25
옥외광고발전기금	799,946	84,440	119,575	35,135	884,386	10.56
식품진흥기금	233,212	9,725	24,973	15,248	242,936	4.17
성평등기금	1,035,232	8,807	28,707	19,900	1,044,039	0.85
도시재생활성화기금	12,731,314	-311,551	310,269	621,820	12,419,763	-2.45
소 계	27,582,458	1,351,496	2,235,962	884,466	28,933,955	4.90
재정안정화기금	70,000,000	1,572,297	1,572,297	-	71,572,296	2.25
교육환경개선기금	5,002,061	5,077,969	5,119,952	41,982	10,080,030	101.52
합 계	102,584,519	8,001,762	8,928,211	926,448	110,586,281	7.80

당해연도 결산기준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0종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 해당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102,584,519천원에서 조성액 8,928,211천원과 사용액 926,448천원을 감안하여 조성된 당해연도말 기금의 규모는 110,586,28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80%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기금조성액 8,928,211천원 중 전입금은 6,481,579천원, 이자수입은 2,373,22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여력이 부족한 구의 재정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금은 조성보다는 그 사용의 적정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사용용도가 없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액은 전년도말 잔액의 3.21%(884,466천원/27,582,458천원), 당해연도 조성액의 39.56%(884,466천원/2,235,962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때에 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보전과 소비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먼저 기금을 조성한 후 사용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조례에 존속기한이 정해진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 전기간에 대해, 그리고 법률에 따라 존속기한없이 설립된 기금의 경우 일정기간에 대해 사용계획 및 적립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또는 매년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수정된 계획)에 따라 매년 조성액을 마련하고 마련된 조성액 중 사용계획에 따른 것은 전액 사용하는 방향으로 일반회계를 적절하게 보완하는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됩니다. 즉 장래를 위한 적립과 매년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른 조성과 적립 및 사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293,615백만원으로 평균 조성액은 29,362백만원입니다. 단순비교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동구의 전년도말 조성액 102,584백만원은 절대액 기준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별 조성금액의 정당성 근거를 따져보아야 하고 사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5) 결산서 첨부서류

1) 세입금 환급

당해연도의 세입금 환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환급액	사유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기타
합계	844,912	5,766	861	5,733	18,577	813,975
일반회계	803,627	5,766	861	5,669	-	772,754
특별회계-주차장	41,285	-	-	64	-	41,221

당해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844,912천원으로 행정기관착오 5,766천원, 납세자권리구제 861천원, 납세자착오 5,733천원, 차량미등기 18,577천원, 기타 813,975천원입니다.

기타 813,975천원의 주요 내용은 감액변경 내시로 인한 국비 과오납 환급 441,303천원, 시비 과오납 환급 303,508천원,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감면 18,078천원, 수강취소로 인한 환급 9,085천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대부료 감경 41,221천원 등입니다.

행정기관착오에 의한 환급은 발생사실만으로 아직 환급되지 않은 착오납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가급적 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채권

당해연도의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928,517	4,685	26,656	1,906,546
일반회계	1,742,312		5,454	1,736,858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91,002	3,942	460	94,484
기금 - 사회복지기금	95,203	743	20,743	75,203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906,54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71천원 감소 하였으며,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 1,736,858천원은 공무원학자대여금 1,728,146천원 및 전화선예치금 8,71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94,484천원은 전액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며, 사회복지기금 채권 현재액 75,203천원은 기금 용자금 원금 65,000천원과 미수이자수익 10,203천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사회복지기금은 수혜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기금의 원금과 이자회수는 이행기간 도래에 맞춰 원활히 진행되는 반면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의 반환실적은 아주 저조한 상황이므로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 3) 공유재산

당해연도의 용도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용도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305,582,039	26,485,845	14,691,393	317,376,491
행정재산	계	298,227,748	25,729,426	11,040,097	312,917,078
	공공용 재산	201,563,139	7,767,517	9,867,916	199,462,741
	공용 재산	96,664,609	17,961,910	1,172,181	113,454,337
일반재산		7,354,291	756,419	3,651,296	4,459,413

당해연도말 현재 용도별 공유재산 가액은 행정재산 312,917,078천원, 일반재산 4,459,413천원으로 총 가액은 317,376,491천원이며, 공공용 재산은 전년도 대비 2,100,398천원 감소한 199,462,741천원이며, 공용재산은 전년도 대비 16,789,728천원 증가한 113,454,337천원입니다. 재산운용상 수익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4,459,41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94,780천원 감소 하였습니다.

종류별 공유재산 내역은 토지 182,946,088천원(479,194m<sup>2</sup>), 건물 81,541,715천원(76,797m<sup>2</sup>), 기타 52,888,688천원(299,942건)입니다.

#### 4) 물품

당해연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545	71	25	591
금액	4,699,480	583,891	458,121	4,825,250

당해연도말 물품은 각종 차량 및 사무용비품의 취득으로 583,891천원이 증가하고 각종 차량 및 비품의 처분으로 458,121천원이 감소하여 4,825,250천원입니다.

#### 5) 보조금 집행

당해연도의 보조금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국비	108,505,790	108,475,513	101,188,173	5,248,924	2,038,416
	시비	50,646,386	50,452,075	35,353,683	13,257,694	1,840,699
	구비	40,634,447	40,757,026	27,575,349	10,587,855	2,593,822
	소계	199,786,623	199,684,614	164,117,205	29,094,473	6,472,937
특별회계	국비	300,378	300,378	262,870	-	37,508
	시비	60,520	60,520	55,397	-	5,123
	구비	49,373	49,373	41,985	-	7,388
	소계	410,271	410,271	360,252	-	50,019
합계		200,196,894	200,094,885	164,477,456	29,094,473	6,522,956

보조금 집행 현황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을 제외한 보조금(국비, 시비)의 당해연도 수령분 집행잔액은 3,879,115천원으로 보조금수령액(국비, 시비) 158,927,588천원 대비 2.44%(전년도 2.67%)입니다. 또한 당해연도말 일반회계의 보조금(국비, 시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9,685,599천원 증가한 18,506,618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중 국비, 시비 보조금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해 시비 485,688천원을 수령하였으나 139,266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지역고용 등 특별지원 관련 시비 수령액 95,000천원 중 24,000천원이, 저소득실직자를 위한 희망근로지원사업비로 국비 수령액 45,000천원 중 18,636천원이, 지역일자리사업비로 수령한 국비 100,000천원 중 37,09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되었습니다.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관련 국비 수령액 464,240천원 중 171,955천원과 시비 수령액 58,030천원 중 21,494천원이, 자활·자립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각각 국비 447,888천원과 1,98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86,863천원과 103,821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조금은 최대한 많이 수령하고 집행 또는 이월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용도와 금액이 명확히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액은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하겠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나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사용이 불요·불급하게 된 경우라면 무리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의 발생여부나 금액의 크고작음을 따지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성인지 결산

당해연도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

성과목표수	목표달성 지표수	목표미달성 지표수	목표 달성률(%)
35	19	16	54.29

당해연도의 성인지결산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34	23,639,177	11,840,127	50.09
일 반 회 계	31	23,012,617	11,421,986	49.63
기타특별회계	1	372,850	270,931	72.66
기 금	2	253,710	147,210	58.0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과 도시전략실 및 안전도시국의 주요 사업들이 계속비이월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54.29%(전년도 71.43%)의 성과지표 달성률과 50.09%(전년도 86.70%)의 예산집행률은 많이 저조하므로 향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 3. 기타 권고사항

#### (1) 예비비의 적정 편성 및 지출 통제 필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한도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65,270천원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예산액		11,170,283
사용액	쾌적한 청사 운영	42,000
	주민자치센터 지원	20,000
	재난복구지원	479,000
	공교육활성화 지원	30,000
	박물관 관리	15,200
	긴급재난지원금	2,112
	양방진료사업	3,600
	원활한 보상 추진	35,820
	기타	1,219
	소계	628,951
집행잔액		10,541,332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동구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재해나 재난관련 예비비의 책정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합산액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범위로 제한하여 과다한 예비비 책정을 지양하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책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층 정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예비비 사용내역 중 편성과목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은 재난복구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뿐이며, 나머지 지출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지출사안이므로 정상적인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2) 복식회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재무제표 검토 실효성 확인 절차 필요

전년도말의 대여학자금부담금 잔액에서 당해연도 부담금 납입액을 더하고 공단으로부터의 부담금 반환금을 뺀 당해연도말의 부담금 잔액을 재정상태표의 장·단기대여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전년도까지 부담금 잔액을 재정상태표에 잘못 표시하였고 당해연도에 해당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127,310천원의 부담금 반환이 예상되므로(2020.11월경에 공단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확정금액은 아니지만 변동 가능성은 낮으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당해연도 재정상태표에 이 금액만큼 단기대여금으로 유동성대체하여야 하나 전액 장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아래 권고사항 ‘(5)재무제표 주식 검토사항 - 계류중인 소송 등 우발채무’와 ‘(7)보건소 진료수입의 발생주의 수익처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복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복식회계원리의 이해 증진을 위한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2명의 재무과 복식회계 담당자가 복식회계 전 부문을 전담하는 상황이고 그 중 1명이 순환근무 대상이라면 업무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 사람이 계속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오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몇 명의 복식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들간의 교차검증 가능한 범위내의 순환근무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부서 실무자들도 업무 특성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식회계절차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동구의 재무회계 상황은 회계적 사건의 분개와 결산 등 재무제표 작성에 치우쳐 회계처리의 오류확인과 상호검증을 위한 업무분장 등 체계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미흡해 보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재무제표 검토인에게 전달하여 영리기업과 달리 예산회계를 주로 하고 재무회계를 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회계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재무제표 검토계획수립과 검토절차 수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회계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문제점 발견시의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3) 결산검사 관련 조례의 개정과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결산 등 예산회계결산만을 담당하던 과거와 달리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회계 중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제표와 주식 및 부속서류 등 재무회계결산, 성과보고서 결산까지 결산검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결산검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업무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런 변경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결산위원의 정수는 의원을 포함해서 3명으로 하고 의원의 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의원 1명, 전의원 1명, 회계감사전문가 1명을 선임하는 현재의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의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3분의 2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회계감사전문가 1명으로는 결산검사 범위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 결산검사 전 범위를 포괄하게 되고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까지 전담하므로 업무부담이 편중되며, 3명의 위원이 업무분장없이 결산검사에 임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검사의 효율성이 저해됨은 물론 차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와 결산검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 4명이면 회계감사전문가 2~3명 또는 결산검사위원이 3명일 때에도 회계감사전문가 2명으로 하여 최소한 회계감사전문가가 2명 이상으로 과반이 되어 요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있고 본분에 충실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동구의회는 2017, 2018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의견서만 의회소식란에 공고하고 그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의견서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의견서는 공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 (4) 결산서 작성양식 및 결산정보 공개방식 개선

매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서 공포하는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는 2019회계연도부터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면 대체하고,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삭제하되 결산개요의 일부 서식을 결산총괄 서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어려운 회계용어와 복잡한 체계로 구성된 I.결산개요를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고 쉬운 용어로 시계열 분석 등 비교정보제공을 위주로 하는 I.‘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고, ②I.결산개요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은 II.세입·세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의 참고자료로, ③I.결산개요 제4장 기금결산 요약은 III.기금결산 제3장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하며, ④I.결산개요 제5장 재무제표 요약분석은 IV.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 3.재무제표 요약·분석으로 이동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⑤II.세입·세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중 문장으로 된 4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결산서(안)에 위 ①,④항은 결산서 작성에 반영하였으나(‘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당해연도 결산서(안)에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전년도 결산서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대신 ‘결산개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②,③,⑤항은 전년도는 물론 당해연도에도 종전과 동일한 양식으로 결산서와 결산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맞춰 결산개요의 요약분석 항목을 해당 항목으로 이동 표시하고, 결산서(안)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시 전체 결산서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결산서 양식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결산서와 부속서류만 공시하고 전자구보에 결산서와 재무제표 요약정보만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산정보들을 통합공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60조는 강행규정인데 반해 제60조의2는 임의규정으로 통합공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 홈페이지에 재무제표의 전체 내용을 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진력하고 전자구보에 통합공시의 이용방법을 함께 고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식 검토사항 - 계류중인 소송 등 우발채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서는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며,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및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조성금 정산금관련 소송은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소송가액 5,358,146천원에 1심 계류중입니다. 부평구의 유사 사례에 대한 1심 판결이 147억원 청구금액에 대해 120억원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분 패소한 전례를 고려하면 패소시 배상금액의 확정 은 어렵지만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도 2021회계연도의 1차 추경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무제표 주식 사항 중 ‘우발채무 등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에서 발생연도와 소송가액, 내역만 각각 2017년, 5,358,146천원, 정산금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발손실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우므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중요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므로 발생연도, 소송가액, 내역 외에 소송의 상대방, 소송의 내용, 현재 진행상태, 소송 승패전망, 패소시 예상되는 배상액, 패소시 재정상태표 관련 계정과목의 변동과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의 변동 및 순자산변동표 기말순자산의 변동 등 상세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6) 구매카드 인센티브 및 부서 공공계좌 이자수익 회계처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7」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등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포인트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①재무과에서 전체 부서와 동별 자료를 합산해서 임시적 세외 기타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유류카드에 대한 포인트는 ①본청 부서(재무과, 자원순환과, 여성정책과, 의회사무과,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는 모두 부서별 세입으로 결산하고, ②11개 동은 세무과에서 일괄 세입 산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결제계좌 등을 포함해 부서별로 관리하는 공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에도 ①개별적으로 세입산입한 부서(총무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여성정책과), ②재무과에서 합산 산입한 부서(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11개동), 그리고 ③전혀 세입 산입하지 않은 부서(도시전략실, 주민자치과)로 구분됩니다.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형태일 이들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신용카드 및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는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세입산입이라는 원칙과 규정에 충실한 회계처리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결산절차의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유류카드의 포인트와 이자는 재무과나 세무과 일괄산입이 아니라 해당 부서별로, 그리고 신용카드 및 유류카드 포인트와 이자수입을 각각 구분해서 모든 부서가 동일한 기준과 계정과목으로 세입산입함으로써 부서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산입여부의 확인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1개 동의 세입결산은 항목에 따라 재무과와 세무과에서 동별 구분없이 ‘그 외 수입’계정과목에 일괄 표시하고 세출결산만 동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의 세입이 기타 수입 항목의 카드 포인트나 공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뿐일지라도 예산결산을 별도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회계단위인 만큼 세출결산 뿐만 아니라 세입결산도 동별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나 ‘그 외 수입’, 세무과 ‘그 외 수입’을 세분해서 동별로 구분표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7) 보건소 진료수입의 발생주의 수익처리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진료 수입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진료일 기준으로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하고, 공단부담금은 진료일 다음 달에 전월 합계액을 한 번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심사평가 후 수령하게 되므로 입금일을 기준으로 현금주의로 수익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의 입금일과 공단부담금의 입금일은 1~2개월의 시차가 생기게 되고 양자의 수익인식시기도 달리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대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수익 인식이 일치하고, 공단부담금은 심사평가결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해 진료수입은 진료행위가 완료되어 청구할 진료비가 확정되는 시기에 발생주의로 수익인식해야 하고, 심사평가로 공단부담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감액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 환급도 같이 발생하며, 공단부담금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양자의 수익인식시기가 크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2월에 1월분 공단부담금 신청을 하지 않고 3월에 1월분과 2월분의 신청을 함께 하여 월별 수입금액이 왜곡 표시된 예가 있으며, 만약 이런 상황이 연말연초에 벌어진다면 회계연도의 기간귀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공단부담금의 수익인식시기를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공단부담금 지연청구액(또는 미청구액)은 미수납액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심사평가결과 공단부담금 청구금액과 심사평가금액이 달라서 감액이 발생한다면 조정항목으로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회계처리가 일치하게 되면 양자간의 결산절차도 간소화될 것입니다. 설령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의 적용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8) 세대(世代)별 예산균형과 복지비 지출 증액 방안

결산검사를 위해 별도 징구한 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 영·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출액은 21,277,612천원인 반면 고령층(사업에 따라 60세,65세,70세,75세 이상자 대상)에 대한 지출액은 60,053,422천원으로 영·유·아동·청소년 대상 지출액의 2.82배에 달합니다.

영·유·아동·청소년 대상 지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몇 가지 예를 들면 구립도서관운영 사업 중 도서관구입비는 지출액 대비 10.65%(61,994천원/581,860천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중 도서관구입비 비중도 20.58%(30,951천원/150,359천원)으로 연간 도서관구입비 총액이 92,945천원에 불과해 연간 예산현액이나 도서관운영비 총액 대비 지출액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어르신품위유지비로 연간 6만원을 지급하고 2021연도부터는 12만원으로 증액 예정이지만, 영·유·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슷한 복지제도는 없습니다.

꿈드림장학회의 경우 당해연도말 기준 기본재산 10,000,000천원을 제외하고 장학금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852,967천원(재무회계 기준)이며, 당해연도에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지급인원이 전년도의 1,188명에서 당해연도에 129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447,682천원에서 216,260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이나 동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장학금 지급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70,000,000천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말 현재 지방채 등 차입금이 전혀 없으며,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30,715,780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급격한 재정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기탁금의 추가적인 확보방안도 필요하지만, 이자수익에 대부분의 재원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낮은 금리로는 장학회 운영비와 장학금 증액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이므로 장학회에 대한 동구의 운영비 지원을 늘리거나 출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별 예산균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대별 예산균형입니다. 성인지 예산과 달리 산술적 균형은 아니더라도 형평적 균형은 필요합니다.

영·유·아동과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은 분명하나 미래투자를 소홀히 하면 장래의 복지기반이 와해되고 잠재적인 세대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간 예산균형을 위한 고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의 2019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가족및여성과 노인·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액 및 세출총액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의 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른 2019년도말 현재의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와 공무원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2020년도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현황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명, 명, 명, %, 천원)

구분	보육가족 및여성(가)	노인·청 소년(나)	가/나 (%)	주민수	공무원수	1000명당 공무원수	사회복지 비비율(%)	2020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중구	37,587	46,986	80.00	135,135	743	5.50	36.99	2,789
미추홀구	101,806	167,660	60.72	408,862	1,101	2.69	65.00	1,771
서구	192,419	140,566	136.89	544,556	1,164	2.14	52.18	1,555
계양구	99,695	96,088	103.75	303,471	872	2.87	57.78	1,787
부평구	165,819	163,981	107.65	511,577	1,231	2.41	62.87	1,740
남동구	136,323	153,568	88.77	532,704	1,101	2.07	61.44	1,581
연수구	97,837	82,970	117.92	366,550	886	2.42	52.06	1,565
합계	831,486	851,819	97.61	2,802,855	7,098	2.53		
<b>7개구평균</b>	<b>118,783</b>	<b>121,688</b>	<b>97.61</b>	<b>400,407</b>	<b>1,014</b>	<b>2.53</b>	<b>55.47</b>	<b>1,827</b>
본청	889,337	982,235	90.54	2,957,026	6,885	2.33	38.82	2,729
강화군	9,761	63,278	15.43	69,178	749	10.83	21.14	8,030
옹진군	5,953	19,220	30.97	20,566	620	30.15	17.33	14,928
<b>동구</b>	<b>18,323</b>	<b>49,042</b>	<b>37.36</b>	<b>64,427</b>	<b>564</b>	<b>8.75</b>	<b>31.98</b>	<b>4,128</b>

영·유·아동·청소년과 고령층 지출액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보육가족및여성은 주로 영·유·아동 대상이고 노인·청소년 지출은 주로 노인 대상 지출일 것이므로 간접적인 비교는 가능합니다. 노인·청소년 지출 대비 보육가족및여성 지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자치구의 평균 지출비율은 97.61%이나 동구는 37.36%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한 2019년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 대비 20세 이하 인구 구성비는 7개 자치구 평균 93.87%이고 동구는 50.20%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세대별 지출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납니다.

행정구역이 넓게 산재되어 있는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 평균은 2.53명인데 반해 동구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는 8.75명으로 면적, 주민수, 세대수 등 어떤 기준으로든 현재 공무원수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곳은 옹진군과 동구뿐입니다.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여 인건비 지출을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꾀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이 다른 7개 자치구의 2.26배(4,128/1,827)인데도 구도심이라는 입지적 한계에 따른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재정비의 시급성으로 인해 예산지출이 이들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시정하고, 구민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반영하여 7개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55.47%에 크게 미달하는 동구의 지출비율 31.98%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비 지출 증액도 필요합니다.